

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0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9회 부천시의회(임사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7년 10월 17일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환경보전과장 정홍준)

□ 제안이유

- 「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조례 제2240호, 2007. 8. 9. 공포·시행)된 일부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시정권고(경기도 법무담당관-8355, 2007. 7. 30.)가 있어,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소위원회의 위원은 별도로 외부인을 위촉하지 아니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함.(안 제7조제1항)
- 나.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안건과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토의에 붙이는 안건으로 함.(안 제7조2제2항)

3.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경기도에서 시정권고 받은 내용은?	○본 조례가 2007. 8. 9 제정되어 경기도에 송부 하였으나 경기도법무담당관실에서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회 안건 심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시정권고가 있었음.
○소위원회에서 처리 할 심의 안건은 정확히 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?	○위원회에서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음.
○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?	○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에 대해 다음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 하겠음.
○위원회와 소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?	○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하고,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 하도록 되어있음.
○소위원회의 권한이 위원회 권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?	○위원회에서 경미한 사안이나,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 하므로 소위원회의 권한은 매우 적다고 판단됨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167호
의결 년월일	2007. 10. 26 (제139회)

제안년월일 : 2007. 10. 26.

제안자 : 건설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 규정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권한위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명문화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할 수 있는 범위를 명문화 하여 소위원회 기능과의 역할을 명문화 함.

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3항 “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”을 “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 (위원회에서 권한 위임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) 은 “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<u>자연환경·대기환경·수질환경·소음·진동·폐기물 등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수도업무담당국장이 되며,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<u>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④ (생략)</p>	<p>제7조(소위원회)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u>환경수도업무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② <u>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.</u></p> <p>1. <u>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안건</u></p> <p>2. <u>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토의에 붙이는 안건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소위원회)① 개정안과 같음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② 개정안과 같음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(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하는 경우에 한한다)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</p>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자연환경·대기환경·수질환경·소음·진동·폐기물 등의 전문가”를 “환경수도업무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.

1.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안건
2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안건

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(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하는 경우에만 한다)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